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7~93 |
|----------|---------|

| | |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법률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불편·부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근거 없이 의무 부과 내용 삭제함(안 제6조, 별지 제5호서식)

○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근거: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에서는 군수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일반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삭제함.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안 제1조,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7. 28.~8.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1): 합천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 <p><u><삭 제></u></p> |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제 호

거창군수 귀하

주채무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거창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라. 상환기간

마. 상환계획

3. 사유

가. 주채무 발생

나. 거창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거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거창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거창군수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거창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거창군수는 **다목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거창군에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제 호

귀하

거창군수(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거창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6. 상환계획
7. 담 보
8. 용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거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거창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 거창군수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거창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 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라. 거창군수는 **다목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마. 채권자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거창군수 귀하

채권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5. 상환기간
6. 상환재원
7. 담보
8. 용자재원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거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거창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거창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채권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거창군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용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거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거창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거창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